**어린이사랑회 동아리 회칙**

**제 1장 총칙**

**제 1조 [동아리 명칭]**

-본 회는 어린이 사랑회라고 칭한다.

**제 2조 [목적]**

-본 회는 각 지역에서 비영리로 운영되는 탁아소 자원활동으로 아동의 올바른 교육에 기여함을

목적으로 한다.

**제 3조 [동아리 소재]**

-본 회는 동아리 연합회 산하에 둔다.

**제 2장 임원진 및 집행부**

**제 1조 [임원진의 임기]**

-임원진은 회장, 부회장, 총무, 기획부장, 활동부장, 미화부장으로 정의한다.

-임원진의 임기는 1학기로 한다.

**제 2조 [임원진 선출 방식]**

-임원진은 종강총회에서 자원하거나 추천된 후보자중에서 선출하며 출석 인원 과반수의 득표자를

당선자로 한다.

**제 3조 [임원진]**

-회장은 동아리 내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.

-부회장은 활동보고서와 동아리연합회에서 시행하는 각종 행사와 공지사항을 숙지하고 본 동아리

에 공지한다.

-총무는 동아리 내의 모든 회계업무를 수행한다.

-활동부장은 동아리에서 활동하는 각종 봉사활동들을 알아보고 관리한다.

-기획부장은 동아리 내 모든 행사를 주도적으로 기획하며, 행사 장소를 예약한다.

-미화부장은 동아리방과 동아리방 내 모든 물품을 관리한다.

**제 4조 [임원진 회의]**

-모든 임원진들의 시간을 맞추어 매달 1회 이상 회의를 한다.

**제 3장 회원**

**제 1조 [회원 자격 및 의무]**

-본 회는 회원을 숭실대학교 재학생으로 한다.

**제 2조 [회원의 가입]**

-본 회의 회원은 동아리 '입회원서'를 작성함으로서 가입이 가능하다.

**제 3조 [회원의 탈퇴]**

-회원의 탈퇴는 자유이다.

**제 4장 회의**

**제 1조 [총회]**

-매 학기당 개강총회와 종강총회가 있다.

-임원진은 임시총회를 열 수 있으며 임시총회는 회장 및 임원 3인이상 또는 회원 과반수의 요구

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.

**제 5장 재정**

**제 1조 [수입]**

-본 회의 재정은 자체 경비와 보조금으로 한다.

-자체 경비는 매학기 1인당 20.000원을 총무부에 납부한다.

**제 2조 [회비]**

-회비는 매학기 1인당 20.000원을 총무부에 납부한다.

-특수한 상황의 경우 임원진의 재량으로 회비 금액이 변동될 수 있다.

-신입회원의 경우에는 5000원의 입회비를 총무부에 납부한다.

**제 3조 [결산보고]**

-결산보고는 정기총회에서 하며 결산 보고서 전회원으로부터 감사를 받는다.

**제 6장 동아리 등록**

**제 1조 [등록]**

- 동아리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숭실대학교 학칙 및 동아리연합회 회칙에 따른다.

**제 7장 부칙**

**제 1조 [회칙 발의]**

-회장발의

-임원3인 이상의 발의

-회원 과반수 이상의 발의

-회칙 개정의 발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에서 가능하다.

**제 2조 [회칙 의결]**

-회칙 개정안의 의결은 출석회원 2/3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된다

**제3조[공포 및 발효]**

-개정된 회칙은 정기 총회 후 일주일 이내에 개시하고 배포되어야 한다.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.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